누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누구나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사자;
- 공공시설에서 차별의 퇴치가 하나의 목적인 조직;
- 인관관계 위원회 자체적 발의로;

어디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Pittsburgh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908 City-County Building
414 Grant Street
Pittsburgh, PA 15219
(412) 255-2600
www.pittsburghpa.gov/chr

피츠버그 인관 관계 위원회는 시 규칙 651-659에 의거하여 주택, 고용과, 공공 숙박시설등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며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55년에 설립된 차별을 금하는 법률을 집행하는 시의 공식 기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TY OF PITTSBURGH
"AMERICA'S MOST LIVABLE CITY"

위원

Winford Craig
Lynette Drawn-Williamson
Lorraine Eberhardt, Ed.D.
Elizabeth Lee Fogarty, Ph.D.
Rabbi Sharyn Henry
Helen Gerhardt
Eric Horwith
Gabriel McMorland
Wasiullah Mohamed
Richard Morris
Mariana Padias
Amanda Z. Rubio, Esq.
Robert Samuel
Curtis A. Smith
Gwendolyn Young

위원은 4년 임기로 시장이 임명하며 시의회가 인준 합니다.

Pittsburgh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908 City-County Building
414 Grant Street
Pittsburgh, PA 15219
(412) 255-2600

차별은

불법입니다

당신이 직장, 주택, 공공 시설을 사용함에서 나이(40세 이상), 인종, 피부색, 성별, 성별 인식 또는 성별 자각, 성적 성향, 종교, 장애, 민족, 출신 국가, 가족의 지위 (주택에 한해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 지위 (주택에 한해서) 또 출생지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문하십시요: www.pittsburghpa.gov/chr

귀하의 권리를 알고 계십시요.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면 당신이 차별을 받았을 수 도 있습니다...

주택에 관해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 집을 구입 하거나, 팔거나,임대하거나, 임대한 것을 다시 임대하거나, 빌려 주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동등한 기회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주택의 점검이 가능 한데도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것;
- 거래조건이나 주택 사용, 주택의 보유 특혜에 관한 차별 대우;
- 주택단위의 어떤 시설에서 가구의 설비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 대우;
- 주택단위 또는 주택시설의 구매, 건축, 재건축, 수리 또는 유지를 위한 융자나 융자 대출 보증등에 대한 준비자금의 거부;
- 차별이나 제한을 명기한 어떠한 간행물, 문장, 광고 규정의 공고나 신청서, 그러한 기록을 만들거나 어떤 차별적인 제한의 진술을 구체화하는것 (예를들면 “아이들은 안됨”, “영어사용자만으로 제한”등);
- 주택공급자에 의한 시의 불공정 관행 법령시행 또는 법령 준수를 방해, 또는 막는 일;
- 주택 판매 또는 임대시, 지역의 인종 구성이 변경 될 것이라는 주택 제공 업체의 허위 증언.

직장 채용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

- 모집, 고용, 임기, 보상, 승진, 해고, 괴롭힘 또는 어떠한 고용함에 대해 다르게 취급을 받았거나;
- 견습생 교육, 실무 경험 연마, 또는 다른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때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직장 채용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

- 어떤 고용 기관에 소개를 해 주지 않거나 그 외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차별을 했을 경우;
- 어떤 노동 기관에 가입할 때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 시의 불공정 행위 법령에 따르는 일을 막거나 방해 하였거나;
- 시의 불공정 행위 법령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였다면.

공공 시설을 사용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 공공시설, 유원지, 또는 놀이공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설의 장점, 설비, 서비스, 특혜, 상품이나 제품을 거부 또는 보류를 받았을 때;
- 간행물, 전시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우편물이나 활자화된 통신으로 어느 숙박 시설, 이익이 되는 일, 시설, 서비스, 특혜, 상품이나 제품을 특정인에게는 거부 또는 보류한다고 하는 공고 또는 광고;
- 특정인의 이용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거나, 반대한다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하거나, 원하지 않으며, 초청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거나 암시하는것;
- 불법으로 공표된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돕거나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또는 어떤 행위던 공공시설법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참가하는 일에 포함 시키는 것;

문의 양식

만약 당신이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아래 열거한 사유에 의해 차별적으로 처리 된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다음 양식을 기입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 주십시요. 위원회의 대표가 추가 정보를 얻기위해 당신에게 연락을 하여 제기한 불법이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그렇다고 판단 되면 정식 기소안을 작성합니다.

불만이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을 때:

☐ 주택 ☐ 공공 시설/서비스
☐ 고용 ☐ 경찰/사회적인 긴장

불만의 근거

☐ 조상출신 ☐ 국가/출생지
☐ 피부색 ☐ 인종
☐ 나이 ☐ 종교
☐ 성별 ☐ 보복
☐ 성적 성향 ☐ 가족의 지위 상태
☐ 성별정체성 ☐ 장애인/장애

이름 _____ 전화 _____

주소 _____

피고소자 성명/회사이름 _____ 전화 _____

주소 _____

차별이나 불법 대우를 받은 날짜와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기소 이유를 쓰십시요.

이 문의 양식을 작성했다고 하여 정식 고소가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절차상의 첫 단계입니다. 정식 기소를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짜로 부터 반드시 **일년**내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요.**Pittsburgh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908 City-County Building
414 Grant Street
Pittsburgh, PA

Phone: (412) 255-2600
Fax: (412) 255-2288
E-mail: HumanRelation@pittsburghpa.gov